

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유희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8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발 의 자: 최유희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석주, 곽향기, 김규남,
김동욱, 김영철, 김원중,
김원태, 김태수, 김형재,
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
박 석, 박영한, 박중화,
유정인, 윤기섭, 윤종복,
이성배, 이숙자, 이종태,
이종환, 채수지, 최민규,
홍국표, 황철규 의원(26
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는 현재 상설 위원회로 운영될 필요성이 낮으며, 실제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.
- 이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여, 필요 시 안전 발생 시 점에만 구성하고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편하고자 함.
- 또한, 비상설화와 부합하지 않는 위원회의 임기, 존속기한,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조정하고,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필요 시 수립할 수 있도록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필요 시 수립 가능하도록 조정(안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)
- 나.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체계로 전환하여 필요 시 운영 가능하도록 변경(안 제13조제1항)

- 다. 비상설화에 따라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, 구성과 해산 기준을 명확히 제시(안 제14조제1항 개정 및 제5항)
- 라.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고 안건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변경(안 제16조제3항)
- 마. 비상설 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규정이 불필요하여 삭제(안 제1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”를 “수립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수립·시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위해”를 “위해 필요 시”로, “설치·운영한다”를 “구성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위원회는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위원회 회의는 안전 발생 시에만 시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.

제19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기본계획 수립)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<u>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7조(기본계획 수립) ① ----- ----- ----- <u>수립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시행계획을 <u>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수립·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) ①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정책을 심의·자문하기 <u>위해</u>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<u>설치·운영한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3조(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) ① ----- ----- ----- <u>위해 필요 시</u> ----- ----- ----- <u>구성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, <u>위촉직</u>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</p>	<p>제14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<u>위원회는</u> <u>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</u></p>

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집한다.

1.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2.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④ (생략)

제19조(위원회 존속기한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 회의는 안건 발생 시에만 시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비상설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참고로 위원회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변화(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)를 검토¹⁾하였으나 서울시 관련부서(행정국 시민협력과) 문의 및 각종 정보확인 결과 별다른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
- 또한 안 제7조(기본계획 수립) 및 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필요 시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유연성을 강화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수반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당관	주 병 준
추계세제팀장	김 중 현
추계분석관	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서울시 관련부서(행정국 시민협력과) 문의결과 최근 3년간 연평균 2회(2022년 1회, 2023년 0회, 2024년 0회) 이상 개최된 바 없어 향후 **안전 발생 빈도가 지금과 같은 추이일 경우**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도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

- 다만 향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어 관련 **안전이 증가할 시 추가재정 소요 발생의 여지가 있으나** 현재로서는 **안전 증가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요소가 없어** 고려사항에서 제외함